

전략물자 관련 수출통관 안내자료

인천관세법인

컨설팅사업부

I. 전략물자 개괄

1. 전략물자의 정의

전략물자라 함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을 말한다.(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2. 전략물자 판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

최근 수출하는 업체들의 물품 중 기존에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물품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만 없다면 대부분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없이 수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2011.08.08)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특히나 동 고시 제 3조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의 경우는 수출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득한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도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반드시 이하에서 설명하는 자가판정 또는 사전판정의 절차를 거쳐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실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3. 관련규정

- 대외무역법 제19조 내지 제31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42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지식경제부고시, 2011.03.16]
-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11.08.08]

II.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내용

1.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

(1) CL24를 이용하는 방법

현재 수출통관을 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표 2의 분량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용어 등도 어렵게 되어 있어 해당 물

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CL24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입력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를 직접 찾는 방법

상기한 CL24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별표 2에서 직접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별표 2의 PDF 파일을 열고 찾기기능(shift + ctrl + F)을 이용하여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각 물품별로 부여된 ECCN 통제번호를 확인하여 검색한 후 해당문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2. 자가판정 및 사전판정

(1) 자가판정

① 정의

자가판정이라 함은 무역거래자 스스로 특정절차와 서식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8조)

② 판정기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5조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한다.

③ 기타

자가판정의 경우 전략물자의 경우는 법적근거가 있지만 전략기술의 경우는 법적근거가 없다.

(2) 사전판정

① 정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사전판정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물자의 사전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되는데 사전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② 사전판정의 신청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 trade)'에 사전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조)

③ 사전판정의 소요기간

사전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다만,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④ 사전판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전략물자 사전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청인 외의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사전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당초 전략물자로 사전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사전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⑤ 사전판정의 유효기간

사전판정일로부터 2년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된 경우 개정 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된다.)

3. 수출허가 종류

(1) 수출허가

①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라 함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반포괄수출허가

일반포괄수출허가 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가”지역으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정포괄수출허가

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0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별표 6의 “나”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같은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수출이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 품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황허가

상황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한다.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3) 중개허가

중개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 시 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수출허가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5)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Ⅲ.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

1. 이용자 등록

고객센터→회원가입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기업회원 개인회원

| 이용가능서비스 | 전략물자 e교육관 | 전략물자 판정서비스 | 전략물자 허가서비스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제 1 조 (목적)</p> <p>본 약관은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지식경제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p> <p>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p> <p>2.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상기 이용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동의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radio"/></p>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p>Yestrade는 아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정보제공자 대상으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 이용됩니다.</p> <p>① 자가판정 및 사전판정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확인을 위한 민원 업무 수행</p> <p>② 수출허가 및 거래보고, 수입목적확인서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하는 허가 민원업무의 수행</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동의 <input type="radio"/> 동의하지 않음 <input checked="" type="radio"/></p> | | | |

● 업체정보 입력

* 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button" value="중복확인"/> * 숫자만 입력하세요 |
| 상 호* | <input type="text"/> | |
| 대표자* | <input type="text"/> | |
| 사업장 주소*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기"/>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사업장 전화번호* | 지역번호 <input type="text"/>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업태* | <input type="text"/> | |
| 종목* | <input type="text"/> | |
| 수발식인식별자 | <input type="text"/> | |
| 상세수발식인식별자 | <input type="text"/> | |
| 무역업 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

● 입력자 정보

| | | |
|----------|--|--|
| 사용자 ID* | <input type="text"/> | <input type="button" value="중복확인"/> (4~16자 사이의 영문 및 숫자 혼합) |
| 비밀번호* | <input type="text"/> | |
| 비밀번호 확인* | <input type="text"/> | |
| 성 명* | <input type="text"/> | |
| 부서 | <input type="text"/> | |
| 직책 | <input type="text"/> | |
| 연락처* | 지역번호 <input type="text"/>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휴대폰* | 번호선택 <input type="text"/>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연락처와 휴대폰중 하나 이상 입력하세요)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SMS수신동의 (신속한 판정허가업무 처리를 위한 안내메시지를 전송해드립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
| FAX | 지역번호 <input type="text"/>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E-mail*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메일링서비스 수신동의 (서비스 공지 및 행사, 새소식, 설문조사 등의 안내 메일을 전송해드립니다.) | |

2. 자가판정

자가판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① 판정 및 신고 >> 자가판정

② HS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관련 품목번호가 출력

- HS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등재번호, HS 품명으로 조회가능
- 관련 품목번호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 등록가능

③ 등재번호 클릭시 각 등재규정의 국·영문 설명이 출력

④ 자가판정 방식 선택

- 온라인 : 온라인 상에서 Parameter Sheet에 따라 실시간으로 판정하는 방식
- 일괄 : Parameter Sheet를 Excel 파일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자의 PC상에서 응답하여 업로드하는 방식

(온라인 등록)



- ① 판정기준에 따라 응답선택을 하고, 특성을 기재
답변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로 간주
- ② 판정결과 해당일 경우 판정이 종료되고, 비해당일 경우 HS 번호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통제번호에 따라 판정을 계속 진행
판정이 종료되면  을 통해 자기판정 결과를 등록

(관정결과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관정결과 등록' (Registration of Assessment Results) page on the ICBL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관정결과등록** (Assessment Result Registration): Contains a search bar and a '등록' (Registration) button.
- 관정결과** (Assessment Result):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관정기준' (Assessment Criteria), '관정결과' (Assessment Result), and '특정기준' (Specific Criteria). The table lists various assessment criteria and their results.
- 관정결과** (Assessment Result):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관정기준' (Assessment Criteria), '관정결과' (Assessment Result), and '특정기준' (Specific Criteria). The table lists various assessment criteria and their results.
- 등록** (Registration): Contains a table with columns for '관정기준' (Assessment Criteria), '관정결과' (Assessment Result), and '특정기준' (Specific Criteria). The table lists various assessment criteria and their results.

A red box highlights the '등록' (Registration) section, and a red circle highlights the '등록' button. An inset image shows a printed version of the form with a red circle around the '등록' button.

- ① 제품명, 제조사, 규격 및 성능 등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자가관정 결과들 시스템에 등록
등록할 경우 향후 수출허가, 신고 등의 업무에 이용가능(해당품목 등록 시 '전략물자 신고' 메뉴로 자동 이동)
 - ② 등록이 끝나면 전략물자 자가관정서 출력양식이 제공됨
- ※ 단, 모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관정신청서 입력 : 2단계 - 품목정보)

① 신청품목의 정확한 품품명, 모델명 및 성능 등을 기재

* <작성예>

- 물품명 : 컴퓨터
- 모델 및 형식 : DM-0000
- 규격 및 성능
 - CPU : Intel Xeon 3.0GHz
 - Memory : 1GB DDR RAM
- 용도 : 데이터 저장
- 사용처 : 일반수출입물자

②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인 기술적 특성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신청서당 하나의 품목만 신청 가능

(관정신청서 입력 : 3단계 - 기술적 특성 명세서)

- ① 입력한 HS 번호와 연계된 통제번호별 통제규정을 볼 수 있으며, 통제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품목의 기술수준에 기재
- ② 제시된 통제번호 이외의 통제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도 가능(입력한주기, 입문한식제 를 통해서 입력항목 조절 가능)
- ③ ①, ② 이외에 작성할 내용은 하단의 기타 항목에 기재하고 작성을 완료한 다음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인 상세정보 조회화면으로 이동



(판정신청서 상세조회)

① 작성 내용을 재확인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각 단계(기본정보, 품목정보, 기술적특성명세서 등)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제출** 을 클릭하여 사전판정 신청완료

※ 판정진행현황 및 신청결과는 각각 '사전판정 진행현황 조회', '사전판정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